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4 선고 2018가단39064(본소), 2019가단32633(반소) 판결
[지료 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변론 종결 2019. 10. 23.

판결 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기재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3.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23,076원, 원고 A, C, D, E에게 각 15,384원, 원고 F에게 6,593원, 원고 G, H에 게 각 4,3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 또는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4. 5. 8.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12. 20.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9.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 5. 2. 별지 1 목록제3,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73년경 시행한 'J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1974. 5. 8.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점유 · 관리하고 있다.

다. 망인은 1996. 6. 15.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B,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망 K, 원고 C, D, E이 있었는데, 망 K이 2017. 5.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F, 자녀들인 원고 G, H가 망 K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지분은 별지 2 상속지분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2008. 11. 16.부터 2018. 11. 16.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그 일부인 10만 원만을 우선 청구한다.

2) 피고

피고는 망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 부지로 점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6, 10,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73. 6. 7.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책정된 금원 중 663,900원(을 제3호증의 2)을 지급받은 점, ② 피고가 보상금 수령확인증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이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는 1973. 9. 15. 보상금 미수령자들에 대하여 2차수령 독촉을 하였는데 그 명단에 망인은 없었으며, 1975. 11.경, 1977. 4. 13. 두 차례에 걸쳐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등기서류 제출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명단에 망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나머지보상금도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1), ③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로서 이 사건공사부지에 포함된 토지 중 여전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토지들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까지추정할 수는 없고, 그러한 토지의 소유자들 중 대부분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합계 면적이 작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4년경부터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보임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약 44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보상요구를 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행사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등을 고려할 때 1973.경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 피고가 공용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분할등기의뢰, 공시송달로 인한 등기의뢰 등을 하였는데, 피고가 보상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의뢰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공용재산의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받았기에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1973. 6. 7. 무렵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원고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망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매매계약 일자도 늦어도 망인이 피고로부터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1973. 6. 7.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3. 6.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매매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선택적 청구인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현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진주시 L 도로 83㎡
2. 경상남도 진주시 M 도로 1,620㎡
3. 경상남도 진주시 N 도로 66㎡
4. 경상남도 진주시 O 도로 671㎡. 끝.

별지 2

상속지분의 표시

피상속인 I (1996. 6. 15. 사망)

순 번	성 명	상속지분	비고
1	원고	21/91	
2	원고	14/91	
3	원고	14/91	
4	원고	14/91	
5	원고	14/91	
6	원고	6/91	
7	원고	4/91	
8	원고	4/91	

1) 1974. 3.경 망인에 대한 보상금이 1,160,1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망인은 1973. 9. 15.경 증액되기 전 보상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미수령자 명단에 망인이 누락된 것이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